납품 시방서

-국립생태원 소방 수신기 노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

2026. 03.

국 립 생 태 원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국립생태원 소방 수신기 노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납품개요

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자재의 공급지연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납품장소 : 국립생태원 일대

- (R형 수신기) 본관, 복원생태관, 생태교육관, 에코리움, 방문자센터
- (방재실) 본관, 에코리움

다. 사업내용

- 본관 방재실 노후 PC 교체(1대)
- R형 수신기 내 노후·단종 모듈 교체
- 수신기 방재실 간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재셋팅
- **통신 안정화 및 연동 기능 정상화**

※ 본 사업의 화재수신기 및 프로그램은 존슨콘트롤즈 인터내셔널코리아(주)(구 동방전자)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자격을 갖춘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업종코드: 0039)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의 등록을 한 자

3. 사업수행 관련 법령 및 규칙

가. 본 사업은 아래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련법
- 한국산업규격(KS)
- 국가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등

II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조건

모든 설치는 본 납품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작업 전 계약자와 감독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납품시방서 및 내역서 중에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은 설치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및 기계,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준한다.
3) 본 납품시방서 및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납품은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설치에 대해 규정한다.

2. 행정 이행사항

1)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수시로 현장을 정리정돈하고 작업상태 확인 및 작업자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고의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망실분실도난화재영업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현장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개선 의무를 진다.
4) 현장대리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는 재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신고한다.
5) 수급인은 설치를 위해 출입하는 각 구역이 보안구역임을 감안하여 출입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발주처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보안사항 및 정보를 발주처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3.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 중 기기 동작상태 등의 제품 결함 및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탁기관은 즉시 무상 수리 또는 대체해야 하며, 하자 보증 기간은 **납품검사 및 성능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4. 안전 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시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내판, 야간 보안등, 위험 표지판 등의 각종 안전 표지판을 필요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

1) 수급인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원과 안전에 대한 협의 등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 이행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작업시행 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종사원이 행하는 모든 작업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관련기관(공사,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의 연락 방법 등을 종사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6.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 중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작업 전 계약자와 감독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설비 설치시 기존 설비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부담으로 시설물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작업 완료 후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4) 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 확인을 받는다.

III 물품 세부사항

1. 특기사항

1)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정품(수신기)으로 교체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으로써,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203)에 따라 설치한다.

4) 종합방재시스템은 방재실에 설치한다.

5) 네트워크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고 상호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6) 수신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제품 아날로그 감지가가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자동소화설비 제어반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8) 납품 후 실제 신호 연동 테스트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정상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설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설비에 대한 세부규격은 아래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1) 규격서 내에 표기된 세부규격과 품질과 성능 및 규격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납품가능하다. (KFI인증 받은 제품에 한함)

2. 세부규격

2.1 수신기

수신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소방용 기기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감시 및 제어하고 설치된 수신기 상호간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신호전송선로를 연결한다.

가. 사양

1) 모델명 : R형 수신기

2) 입력전원 : 120~240VAC 입력

3) 예비전원 : 연축 전지 Battery(12V 12A, 2ea) 적용

4) 사용온도 : 0℃ ~ 49℃

5) 최대 회로수 : 최대 3000 포인트 용량

(최대 Loop 수 : 6 / Loop 당 최대 회로 수 : 1000/ Loop 당 최대 사용 Address : 250ea)

6) 표시창 : 8인치 Color ES Touch Screen Display 적용

7) 3Bay 구조, 250 Address IDNet2, IDNet2+2 통신 Loop 지원

2.2 소방제어 PC 및 프로그램 세팅

Computer, Moniter 등으로 구성되며 건물의 평면도나 단면도에 각종 소방 설비의 작동된 위치가 Symbol로 표시된다.

가. 사양

1) 소방제어 PC(프로그램 포함)

가) CPU : Intel Core i7이상

나) RAM : 8G이상

다) HDD : 200GB이상

라) 운영체계 : Windows 10 Pro 이상, TSW 구동 제어 프로그램 6.05 버전 이상(PCI MODULAR NTWK INTFC CARD, SM-L/R DUPLEX FIBER MEDIA 포함)

마) 화면크기: 24인치 이상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급업체 등의 작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주 및 민간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생태원의 부지 내 또는 생태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현장에서 도급받은 사업(공사, 용역, 물품납품 포함)의 수급업체·산학협력업체·기타 민간업체에 대해 적용한다.

② 기타 수급 및 민간업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 ′24.10.11.>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라 함은 “법”이 적용되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기관 대표(원장)를 말한다.

②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업을 말하며,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③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신설 : ′24.10.11.>

④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 ′24.10.11.>

⑤ “수급업체”라 함은 사업장의 연구, 전시, 교육 등 생태원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 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수선, 납품, 용역, 일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 ′24.10.11.>

⑥ “민간업체”라 함은 임대(식당, 카페, 기념품 등) 등 생태원의 정당한 지휘 감독권이 행사되는 관련 업무로 사업장 부지 내 시설을 갖추고 독자적 사업을 행하거나 외부기관(업체)에서 방문하여 점검, 조사, 촬영 등 생태원의 시설을 이용 또는 운영(주말장터 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23.7.3.〉

⑦ “감독자”라 함은 소관사업(공사, 용역, 물품납품 포함)의 시행부서 담당자 및 수급업체, 민간업체의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 ′24.10.11.>

제4조(안전계약 특수조건) 사업주관 부서는 수급 및 민간업체와 계약 추진 시 별표 1에 따라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고 업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약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다<개정 : ′24.10.11.>

제4조의1(적격수급업체의 선정) 업체 선정 시에는 계약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별표 2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이행확약서) 수급업체 대표자는 감독자에게 계약 단계 시 별지 1에 따라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현장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민간업체 등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본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4.10.11.>

제5조(비상연락체계망 구축) ① 감독자와 수급업체 대표자는 사업 시행 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 및 복구를 위해 상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 ′24.10.11.>

② 비상연락체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관 감독자와 수급업체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의 연락처<개정 : '24.10.11.>
2.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해야 할 관련 기관 및 공사 관련 업체 연락처
3.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인근 병원 연락처
4.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협업 기관, 타 업체 등의 연락처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수급업체 대표자는 사업 개시 전 별지 2에 따라 정기 작업자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교육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시작 전 별지 3, 4에 따라 일일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대책에 대해 작업자들과 공유하고 현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업주관 부서에서 채용한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관 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일지,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근거를 유지한다.<개정 : '23.12.07., '24.10.11.>

② 수급업체 대표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대상으로 형태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감독자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4.10.11.>

③ 감독자는 수급업체 안전교육에 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수급업체가 실시한 교육에 대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 '24.10.11.>

제7조(안전 보호구 구비) ① 수급업체 대표자는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작업시행 전 작업자에게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및 작업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5에 따라 기록을 유지·관리한다.<개정 : '24.10.11.>

② 감독자는 수급업체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류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지 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업체가 사정상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생태원에서 보유한 안전장비를 수급업체에게 작업기간 동안 대여 해 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관 부서에서 채용한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관 부서에서 안전장비를 지급한 후 별지 5에 따라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유지한다. <개정 : '24.10.11.>

③ 감독자는 수급업체가 적정 안전장비를 지급 및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작업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수급업체는 이 명령에 즉각 따라야 한다.<개정 : '24.10.11.>

제7조의1(휴게장소 설치) ① 수급업체 대표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업주관 부서는 수급업체 대표자와 휴게장소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24.10.11.>

② 휴게장소는 냉난방 장치, 음용이 가능한 물, 의자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안전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 등) ① 수급업체는 공사 및 공사성 용역 착공 전까지 해당 공사에 대에 별지 6에 따라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평가 실시 후 해당사업 주관부서, 안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해당사업 주관부서, 안전부서의 승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 '24.10.11.>

② 수급업체는 고위험 작업(전기차단, 화기, 고소, 중장비, 밀폐공간, 굴착)을 수행하는 경우 별지 7에 따라 해당 작업 전까지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 감독자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 일일안전교육일지를 작업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 '24.10.11.>

③ 수급업체는 차량계 건설기계·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중량물 취급 건설

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별지 8에 따라 해당 장비의 현장 투입 전까지 사전조사 및 차량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장 승인을 완료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는 작업착수 전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별지 9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 '23.12.07., '24.10.11.>

④ 수급업체는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대상 작업에 대해 평일 18시 이후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지 10에 따라 야간·휴일·주말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 부서 승인을 완료 후 사업주관 부서 감독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야간작업계획서는 당일 17시 이전, 휴일·주말은 전일 17시 이전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주관 부서는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 '24.10.11.>

제9조(공종별 작업절차 및 방법) 사업주관 부서와 수급업체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공사(공사성 용역 포함) 전 작업공정 절차 및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개정 : '24.10.11.>

①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② 고소작업의 방법과 절차, 작업 시 주의사항 등 세부 사항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화기작업 방법과 절차, 작업 시 주의사항 등 세부 사항은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또한 화기작업(용접, 용단) 시 별지 11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화기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전기작업 방법과 절차, 작업 시 주의사항 등 세부 사항은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⑤ 기계류 취급작업 방법과 절차, 작업 시 주의사항 등 세부 사항은 「기계의 제작·사용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⑥ 화학물질 취급작업 방법과 절차, 작업 시 주의사항 등 세부 사항은「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⑦ 사업주관 부서는 건설공사 금액 1억원에서 120억 미만의 공사를 추진하려는 경우 계약 전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일부 공사는 제외될 수 있다.<개정 : ’23.12.07.>

제10조(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① 안전부서는 사업주관 부서장 등과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 ’23.12.07.>

1. 구성인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주관 부서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지정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수급 및 민간업체는 업체 대표(현장 소장, 관리자 등)로 한다. <개정 : ’23.12.07., ′24.10.11., ′26.01.06.>
2. 대상은 공사·공사성 용역(30일 이상), 조경용역, 연간 계약 용역(총 60일 이상), 임대 업체 등으로 한다.
3. 운영 주기는 월 1회로 한다.
4. 협의내용은 수급 및 민간업체의 작업 및 안전보건 관련 사항으로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수급 및 민간업체 대표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작업장에 대해 주 1회 순회 점검을 별지 1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 ′24.10.11.>

1. 점검 인원은 사업주관 부서장, 업체 대표(현장소장, 관리자 등) 또는 근로자로 한다. <개정 : ’23.12.07.>
2. 점검대상은 공사·공사성 용역, 조경용역, 임대업체 등으로 한다.
3. 점검내용은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안전 조치 사항으로 하며, 기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 및 민간업체 대표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작업장에 대해 분기 1회 합동 안전 점검을 별지 1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 '24.10.11., '26.01.06.>

1. 점검인원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주관 부서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지정하는 부서장, 업체 대표(현장소장, 관리자 등), 업체 근로자로 한다. <개정 : '23.12.07., '26.01.06.>
2. 점검대상은 공사·공사성 용역(30일 이상), 조경용역, 연간 계약 용역(총 60일 이상), 임대 업체 등으로 한다.
3. 점검내용은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으로 하며, 기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④ 사업주관 부서장 및 감독자는 수급업체 등 생태원의 정당한 업무지도 감독권이 미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 '23.12.07., '24.10.11.>

제11조(사내도급 금지 등) ① 원장은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늄의 제련, 주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도급을 전면 금지한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으로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 도급을 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공종과 장소에 적합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를 반드시 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와 수급업체 및 민간업체 대표자 등은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개정 : '24.10.11.>

제12조(응급조치 등) ① 사업장 내는 평상시에 응급비상 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과 동시에 그 재해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처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치료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해자가 의식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해자가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아래턱을 밀어내어 기도를 열어주고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출혈의 유무를 살펴본다.
4. 맥을 짚어본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동공을 살펴본다. 동공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동공의 크기가 좌우 틀리면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5. 재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6. 재해자를 운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재해자의 마음을 가라 앉히고 되도록 재해자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 및 민간업체 등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생태원에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 '24.10.11.>

제13조(수급업체 금지사항)<개정 '24.10.11.> ① 수급업체 직원, 차량은 감독자의 지휘 없이 임의로 작업장 출입 및 작업을 개시해서는 안되며, 감독자와 사전 연락 후 충분한 안전대책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 '24.10.11.>

② 작업지역 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고압가스, 전기 등을 처리장 내 시설물에서 인입,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은 항시 정리·정돈하여 안전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수급업체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개정 : '24.10.11.>

⑥ 수급업체는 작업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분리수거 후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후 폐기물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24.10.11.>

제14조(수급업체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시 조치 및 공사기간 준수 등) <개정 : '24.10.11.>① 수급업체 근로자는 별표 3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개정 : '24.10.11.>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급업체 대표자, 감독자, 사업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23.12.07. '24.10.11.>

③ 수급업체 및 사업 주관부서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 '24.10.11.>

④ 사업주 및 수급업체 대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 '24.10.11.>

⑤ 감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업체 및 민간업체 등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관 감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 '24.10.11.>

⑥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공사에 한하여 월 1회 이상 공사(용역)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유무 및 실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준공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지침에 관한 실행에 대하여 본원과 센터는 안전부서에서 확인·관리한다.

② 계약 시 수반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과 같이 개별 계약건에 따른 공종

별 안전관리 사항은 계약의 일부로 보고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③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시 주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관련 법령 및 생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KOSAH GUIDE,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른다.

부 칙 <2021.7.1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27.>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7.0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07.>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0.1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9.1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1.06.>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

2022.10.27. 제정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계약 특수 조건은 국립생태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 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사고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아래 각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국립생태원(이하'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이하 같음)가 체결하는 생태원(센터) 부지 내 또는 당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공사·용역 및 설치 조건부 구매계약(이하"공사"라 한다)에 있어 당사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이하 같음] 작업 및 연구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

한 기준 및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담당부서에 협조를 받은 후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필수 안전지침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이행확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4. 10. 11.>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별도로 계약 완료 후 정기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별표1)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안전규칙 별표7)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해서 아래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23.12.07.>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 및 이행점검(정기평가 등) 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 일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작업내용・위험요인・안전대책에 대해 작업자들과 공유하고 현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안전사

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기차단, 화기, 고소, 중장비, 밀폐공간, 굴착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주관 부서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일 18시 이후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야간·휴일·주말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부서의 승인을 완료 후 공사감독부서 감독 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이동식 중장비 등),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및 절단기 등 에너지 사용기계·장비에 대한 법정검사 유무, 방호조치 유무 등 정상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참여하여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 2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시 작업자 편성을 2인 이상 1조로 하여 단독작업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단독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 '26.01.06.>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감시(유도)인을 배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작업(적당한 투하설비가 있는 경우 제외)
2.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3.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곤란한 작업
4. 잠수작업
5. 밀폐공간 작업
6.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화물이나 그 차량계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8.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접근을 막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9.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10. 기타 안전보건규칙에서 감시(유도)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작업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당사는 가용할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휴게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휴게장소는 냉난방 장치, 음용이 가능한 물, 의자가 기본적으로 구비 되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신고센터(041.950.5316)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자에게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및 작업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는 설계당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시 공고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감독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당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과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고용보험법 제15조 제 2항 해당하는 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당사에 즉시 보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제출시에 그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해당근로자의 퇴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①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계약상대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2. 공사·용역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안전지적을 받은 업체(수급인·관계수급인 및 수급인·관계 수급인의 현장근로자)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누계 벌점과 상관없이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는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위험현장 이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사고 조사)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안전부서, 공사주관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당사는 사업소별로 계약상대자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 실질적 지배관리가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계약상대자는 제외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이슈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 안건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기간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0조(적격 수급업체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하여 [별표 2]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평가받아야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당사가 정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에 따라 입찰단계에서 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받아야 한다.

③ 입찰참가업체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낙찰 처리되며, 계약 후 안전보건 수준평가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는 매년 말 안전전담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현행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전전담부서는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 '24.10.11.>

⑤ 평가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한다.<신설 : '24.10.11.>

제21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느끼기에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별표 3]에 따라 위험신고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신고를 할 경우 당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당사가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용품 및 장비를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당사의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에서 운영중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를 통하여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

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개정 : '24.10.11.>

④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자료 제출 및 수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별표 2]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 <개정 : '23.12.7., '24.10.11.>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1. 개요

□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름

□ 적용대상

○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 임대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 임대사업 예) 정보통신 위탁운영, 임대업체 등 포함

○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에 대해 실시

* 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관리 용역 등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되거나, 단순 구매, 사무 관련 용역, 위탁사업, 진단, 측정, 심사, 점검, 근로자 교육, 수거 및 처리 등 업무 및 과업은 제외

□ 평가 방법 및 평가 주체

○ 계약체결 전 평가 실시 (계약형태별 적용시기 별첨 3 참조)

○ 1년 이상 계약 건에 한해 매년 말 재평가 실시

□ 평가부서 : 계약 금액 및 주체별 평가 권한 부여

구 분	평가 부서
소액구매 (500만원 미만)	사업부서
수의계약, 입찰의뢰	본원(안전전담부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안전담당부서)

※ (소액구매) 사업부서 업체 평가에 대한 본원(안전전담부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안전담당부서) 검토 가능

2. 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1, 2 참조)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 수준	운영 관리	재해발생수준	자체 요구사항
배점	100	20	40	20	20	가점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

○ 평가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하여 계약 체결 가능(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4. 평가 결과 적용

□ 평가 결과 적용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임대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임대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7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임대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 [B등급] 이상 작업가능

○ [C등급] 작업불가

※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필수 제출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3. 계약형태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 끝.

[별첨 1]<개정 : '25.09.13.>

담당	부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계 약 명 :　　□ 수급업체명 :　　□ 추정금액 :
□ 종합등급　　□ 평가일 :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임대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임대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7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임대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업체의 안전보건 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작업 현황	▸ 동일공종 작업 실적 및 투입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10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5	
7.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5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9.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 운영관리		20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2.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1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5점)	-	
기타사항			

[별첨 2]<개정 : '24.10.1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됨

1.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 A : 안전보건 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의지(교육, 법규준수, 점검, 개선조치 등)						
- B : 안전보건 방침의 안전확보에 대한 실행의지가 상당부분 만족						
- C :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 안전확보에 대한 실행의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내용 누락						
- D, E : 안전보건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A	B	C	D	E
		10	8	6	4	2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A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 인적·물적 범위 포함,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고, 필요 시 안전관련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수립 포함						
- B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만족						
- C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 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고, 법적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D, E : 안전관리계획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3.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 조직) 및 자격 증빙 서류 평가						
- A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 B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C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 D, E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작업현황	동일공종 작업 실적 및 투입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A	B	C	D	E
		10	8	6	4	2
· 안전관리계획서(작업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세부 작업공정표) 및 자격 증빙 서류 평가						
- A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과 경험이 풍부함, 사업 규모에 맞는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이 높고, 투입인력도 적정함						
- B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음						
- C :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은 높으나 공사 규모 대비 투입인력이 적음						
- D, E : 동일공종에 대한 작업 실적이 없고 기술 인력의 이력·자격·경력이 낮고 투입인력도 적음						

5.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A	B	C	D	E
		10	8	6	4	2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 A : 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B :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누락. - C :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D,E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평가 - A : 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작업공정별 안전 입회점 적절하게 수립,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 B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 순시 및 점검항목이 일부 누락 - C : 안전관리 계획(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D, E : 안전점검 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 A : 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개소의 완료확인·작업중지 등의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 - B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등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 - C : 이행확인절차가 완료확인·작업중지 등 개선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 D, E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평가 - A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활용 계획,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 평가 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 교육 계획 포함 - B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 C :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 - D, E : 안전보건교육 계획 상당 부분 누락 되거나, 계획 자체가 없음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 A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 B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 C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일부 결여 -D, E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A	B	C	D	E
		10	8	6	4	2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비상 시 인원 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 A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B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구체적이지 않음

- C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일부 내용 누락

- D, E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 부분 내용 누락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A	B	C	D	E
		5	4	3	2	1

·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평가

- A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 B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지 않음

- C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일부 누락

- D, E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비상 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 A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 B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다소 미흡

- C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누락

- D,E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A	B	C	D	E
		20	15	10	5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2년간) 각 1부씩 제출

- A :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B :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C :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D :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E :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1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5점)

[별첨 3] <개정 : '23.12.07.>

계약형태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절차

구분	계약절차	구비서류	평가부서
A. [소액구매]		500만원 미만 용역	
사업부서	계획수립 및 평가 요청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물품) 규격서, (용역) 과업지시서, (공사) 시방서, 도면(필요시),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재해율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사업부서	평가	1. 소액구매 대상업체 대상 평가 진행	사업부서
	↓		
사업부서	대금 요청	1. 최초 기안서류(견적서, 규격서 등) 2.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평가증빙서류	
B.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	계획수립 및 계약 요청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 (물품) 규격서, (용역) 과업지시서, (공사) 시방서, 도면(필요시),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재해율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계약부서	[협조]업체검토	1. 수의계약 대상업체 검토 진행	
	↓		
평가부서	[협조]평가	1. 수의계약 대상업체 안전보건 평가	본원(안전전담부서) 멸종(안전담당부서)
	↓		
계약부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C. [입찰계약]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부서	공고 게시	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평가기준표 안내	
	↓		
계약부서	낙찰자 선정 및 평가 요청	1. 낙찰자에게 5일 이내 서류 제출 요청 2. 평가서류, 과업지시서	
	↓		
평가부서	평가 및 결과 통보	1.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평가증빙서류	본원(안전전담부서) 멸종(안전담당부서)
	↓		
계약부서	낙찰자 계약체결		

※ 단,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체결업체는 착공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계약부서)하며 평가결과와 함께 계약체결을 알림(계약부서)

[별표 3] 작업 일시중지 제도

작업 일시중지 제도

1. 작업 일시중지 기준

□ 기본방침

○ 근로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국립생태원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KOSHA GUIDE에서 정하는 안전 미조치로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작업<개정 : '24.10.11.>

□ 세부 선정기준 (붙임 참조)

[공통사항]

○ 착용의무가 있는 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은 채 시행하는 작업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자 통제를 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작업
○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하는 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가 시행하는 유해위험작업
○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

[작업 안전 사항]

○ 유해·위험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작업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를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작업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를 합격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작업
○ 제조, 사용 등이 금지된 물질을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으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작업
- 화재·폭발·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
- 밀폐공간 내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추락·붕괴·충돌·전도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전기설비 또는 전기취급작업에서 감전예방 조치
- 중량물·중장비 취급 작업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방사선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잠수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안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기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위험 작업 등

2. 작업 일시중지 제도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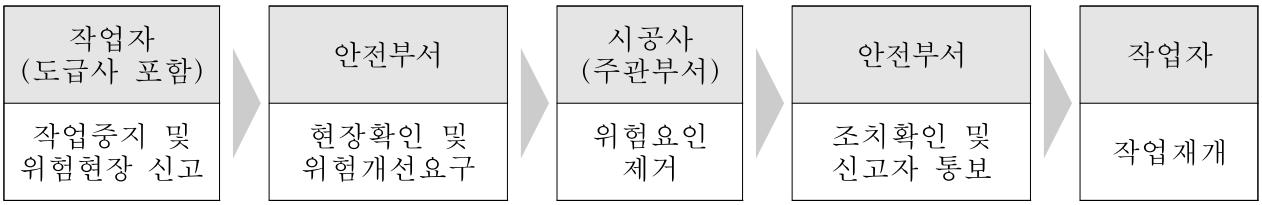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① 위험현장 신고 (작업자)	○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안전부서 신고(안전부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 - 센터 안전부서는 본원 안전부서에 작업중지 관련사항 통보
② 현장확인 및 위험개선요구 (안전부서)	○ 현장 확인, 위험작업 일시중지 대상 검토 및 개선요구 - 안전조치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명령(안전부서) 및 개선조치계획서 제출요구 * 작업중지 근거와 사유, 해제절차와 방법 등 시공사에 설명 - 단시간 소요 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개선 요구
③ 위험요인 제거 (시공사 또는 주관부서)	○ 개선조치계획서 또는 개선요구사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시행 - 완료 후 작업중지 대상은 해제요청(→작업중지 명령부서)
④ 조치확인 (안전부서)	○ 안전보건조치여부 현장확인 및 작업중지 대상은 중지해제 - 신고자에게 조치사항 통보 및 중지해제는 안전부서 시행
⑤ 작업재개 (작업자)	○ 작업현장 복귀 및 작업재개

[별첨 1] 작업 일시중지 대상 세부기준<개정 : '24.10.11..>

작업 일시중지 대상 세부기준

구분	대상	근거
공통	[보호구 미지급] ○ 착용의무가 있는 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은 채 행하는 작업	규칙 제32조
	[작업장소 출입의 금지]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자 통제를 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작업	규칙 제20조
	[안전교육] ○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하는 작업	법 제29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법 제140조
	[안전작업 허가] ○ 안전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법 제46조
	[악천후 및 강풍, 미세먼지, 폭염 등] ○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예, 타워크레인의 경우 순간풍속 10m/s 이상시 설치, 수리, 점검, 해제 중지, 20m/s 이상시 운전중지)	규칙 제37조
	○ 초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즉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KOSHA Guide
	○ 체감온도 33℃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이상 발생 시	KOSHA Guide
작업 안전	[유해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작업	법 제80조

구분	대상	근거
작업 안전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법 제84조
	[안전검사] ○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중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법 제93조
	[제조 등 금지물질] ○ 제조, 사용 등이 금지된 물질을 취급하도록 지시하거나 허가대상 물질을 사전 허가없이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법 제117조 제118조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위한 위험 방지] ○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255조
	○ 인화·가연성 물질 배출 및 제거, 불꽃 비산방지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241조
	○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296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화기 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지침
	[밀폐공간 내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및 미게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619조 3항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유해가스 측정결과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619조의2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외부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623조
	○ 비상시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625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밀폐공간 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지침

작업 안전	[추락·붕괴·충돌·전도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42조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43조
	○ 근로자가 발이 빠지는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 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45조
	○ 붕괴,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경우	규칙 제50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고소작업 및 굴착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지침
	[전기설비 또는 전기취급작업에서 감전예방 조치]	
	○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319조 규칙 제321조
	○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시에 안전조치를 아니하고 작업하는 경우	규칙 제322조
	○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의 작업시 충전부로부터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지침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정전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중량물·중장비 취급 작업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규칙 제385조
	○ 양중기에 그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는 경우	규칙 제135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 제171조 제172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중량물·중장비 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지침

작업 안전	[방사선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방사선 작업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출입자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575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방사선 사용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지침
	[잠수 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작업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는 통화장치가 없이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539조
	○ 지상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잠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545조 제547조
	○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잠수기구등의 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552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잠수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557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잠수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지침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가 허용기준 초과시	제107조
	○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다만 임시작업, 단시간 작업의 경우 예외 허용)	규칙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 유해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수리하거나 탱크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전에 유해물질 농도측정, 내부환기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경우	규칙 제437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제442조
	○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화학물질 취급 작업시 필수 확인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지침
	[기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위험 작업]	
	○ 그밖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칙

법: 산업안전보건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첨 2] 작업 일시중지 명령서<개정 : '26.01.06.>

제 호

작업 일시중지 명령서

작 업 명 :

위 치 :

시공업체 :

전화번호 :

사업주관부서 : ○○실 ○○부

국립생태원의 작업중지 지침에 따라 다음 대상에 대하여 일시 작업중지를 명령하니 개선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부서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지 대상	
안전·보건기준 위반내용	

20○○. . .

국립생태원장 ○○○

국립생태원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O!

작업중지권

안전 ·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국립생태원 본원(서천): 041-950-5319

멸종위기종복원센터(영양): 054-680-7141

습지센터(창녕): 055-530-5534

✓ **작업중지제도(Safety Call)**
현장 근로자가 위험 사항을 발주처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별표 4] 대상별 작업자 안전교육 형태 및 내용<개정 : '24.10.11., '25.09.13.>

대상별 작업자 안전교육 형태

구 분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 참조
매일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TBM)	해당작업 대상자	사업현황, 위험요소 사전 파악 등 안전주의(교육)에 필요시간	- 작업개시 전 현장점검 및 주의 할 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개인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안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직 신규 채용 시 1시간 필수 안전교육 실시 후 매월 1일 기준으로 정기 안전교육 1시간 이상 실시	- 작업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유사작업 사고사례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 작업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유사작업 사고사례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안전 / 보건교육 대상작업 안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별표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	2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별표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대상별 근로자 안전교육 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3. 9. 27.>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과 같음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 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지 1] 안전관리이행확약서<개정 : '24.10.11.>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 업 체 명 :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준수사항은 물론, 국립생태원의 수급업체 안전관리지침, 안전관련법령, 아래의 안전수칙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 ○○○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필히 착용한다.
   -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견고하게 조여서 고정한다.
   - 안전대는 구명줄과 필히 연결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장소를 정리 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중인 기계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장소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 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절대로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후 30분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발생시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소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중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항상 준수한다.
14. 작업중에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진행상황을 감독자 및 안전부서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수칙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가능(발주부서 관리감독자)

[별지 2] 정기 안전보건교육 일지

<table>
<tr><td colspan="3">안전보건교육 일지

교육일시 : 20 . . . (: ~ :)
업 체 명 :</td><td>결
재</td><td>업체 담당자</td><td>업체 관리소장</td></tr>
<tr><td colspan="3"></td><td></td><td></td></tr>
<tr><td>교육과정</td><td colspan="5">가. 정기교육( ) 나. 채용 시의 교육(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라. 특별교육( )
마. 기타( )교육( )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참조</td></tr>
<tr><td rowspan="4">교육인원</td><td>구 분</td><td>인 원</td><td colspan="3">교육 미실시 사유</td></tr>
<tr><td>교육 대상자 수</td><td></td><td colspan="3"></td></tr>
<tr><td>교육 실시자 수</td><td></td><td colspan="3"></td></tr>
<tr><td>교육 미실시자 수</td><td></td><td colspan="3">출장</td></tr>
<tr><td rowspan="2">교육 강사명 및 장소</td><td>직 책</td><td>성 명</td><td>교육장소</td><td colspan="2">비고</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교육내용</td><td colspan="5"></td></tr>
<tr><td>특이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업체명	성 명	서 명	순번	업체명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별지 3] 일일 안전교육 일지<개정 : '23.07.03., '26.01.06.>

일일 안전 교육일지

교육일시 : . . . : ~ :
교육장소 :

서명	업체 담당자	업체 관리소장

업체명	담당자(연락처)	총 인원	참여 인원

작 업 내 용	위 험 요 인
	안 전 대 책

세부 작업 내용 (위험요인포함)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9 이상 작성)	개선후 위험성	개선 완료	감독자 확인
	가능성(5)	중대성(4)	위험성				

참 석 자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별지 4]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공통일반사항)

점검일자 : ○○○○. ○○. ○○

서명	업체 담당자	사업주관 감독자

구분	점 검 사 항	작 업 자		감 독 자		조치사항
		양호	불량	양호	불량	
1	안전 보호구는 지급 및 정확한 착용을 하고 있는가?					
2	작업 전 안전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가?					
3	고소(높이2M이상)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4	예초기 날의 안전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5	본체와 등 받침대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6	주유 시 화재 위험은 없는가?					
7	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8	엔진부에 방호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9	수리·청소 등 비정상 작업시 전원은 차단하는가?					
10	2인 이상 동시 작업 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가?					
11	공구류는 필요한 장소에 정리되어 있는가?					
12	현장 정리정돈은 되어 있는가?					
13	장시간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및 추가 가능

[별지 5]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업체명:)

업체 담당자	업체 관리소장

날짜	보 호 구 명							확 인
	안전모	안전화	방진 마스크	안전대	보안경	방한복	절연용 보호구	수령인 서명

※ 보호구는 공사 및 용역 사항에 적합한 보호구로 변경 및 추가 가능

[별지 6] 안전작업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사업주관 감독자	사업주관 부서장
결재		
협조	안전전담부서	

□ 작업개요(작업개요 및 안전관리 주안점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

□ 작업계획

업체명		**업체 책임자**		**(서명)**
작업기간		**작업시간**		00:00~00:00
작업장소		**작업인원**		
사용기계,장비 (용접기,크레인등)				
안전설비(작업발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작업내용 및 방법 (사용자재, 작업순서 상세설명)				
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요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안전대책**	
특별사항 (안전교육 및 점검)				
작업자(서명)				

※ 안전작업 계획서를 현장 비치 해야 하며 작업후 담당자에게 제출

[별지 7] 안전작업허가서<개정 : '24.10.11., '25.09.13. '26.01.06.>

일반위험작업 허가서(전기차단, 중장비, 화기, 굴착)

허가 승인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신 청 인 : 업체명_____ 직책_____ 성명_____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개요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 소화기목록 □ / 특수작업절차서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굴착도면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유 □무

화기작업					
		＊필요한 부분은 □ 에 √ 표시(업체), 확인은 ○ 에 √ 표시(사업주관부서)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 조명장비	□ ○
• 가스농도 측정	□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소화기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비교)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안전장구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비교)	□ ○	• 환기장비	□ ○	• 안전교육	□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 ○	• 운전요원의 입회	□ ○

(필수) **소방안전관리자 협조** 부서_____ 직책 _____ 성명_____ (서명)

전기차단 □	• 차단기기 : 제어실(_____) 현장(_____) •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허가기간 :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확인자_____(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_____ / 복구시간_____ 확인자_____
굴 착 □	• 설비 : 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_____ • 설비 : 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_____ 허가기간 : ~ 확인자_____(서명)
방사선 □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교,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허가기간 : ~ 확인자_____(서명)
고 소 □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 부착 □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_____(서명)
중장비 □	• 투입장비 : (_____)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_____ 허가기간 : ~ 확인자_____(서명)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업체 : 사업주관부서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 _____(서명) 업체 담당자 : _____(서명)

발급자(담당)	주관부서_____직책_____성명_____(서명)	안전부서 협조
승인자(부서장)	주관부서_____직책_____성명_____(서명)	부서_____직책_____성명_____(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발급자 (서명)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허가서

○ 허가 승인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신청인(업체) : 업체명 _____ 직책 _____ 성명 _____ (서명)

○ 작업수행시간 : ____월____일____시 ~ ____월____일____시

○ 작업장소 : _____

○ 작업내용 : _____

○ 출입자명단 : _____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감독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사전 환기여부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악취) 측정		
환기시설 설치		
통신 장비 이상유무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 호흡용보호구 비치(비상용품)		
안전장구 착용 및 구비		
안전교육 실시(일일안전교육)		

4.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악취) 측정결과(작업전과 작업 이후 작업 개시할 때마다 시간과 측정수치 기록)

측정물질명(기준치)	평가결과	측정시간							
		작업전							
산 소(18~23.5%)									
일산화탄소(30ppm)									
황화수소(10ppm)									
가연성가스(25%미만)									
측정자 성명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관 부서장	부서 :	직책	성명	(서명)
협조자(안전부서)	부서 :	직책	성명	(서명)

일반위험작업 허가서(고소)

허가 승인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신 청 인 : 업체명_____ 직책_____ 성명_____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개요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 소화기목록 □ / 특수작업절차서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굴착도면 □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유 □무

화기작업						＊필요한 부분은 □ 에 √ 표시(업체), 확인은 ○ 에 √ 표시(사업주관부서)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 조명장비	□ ○		
• 가스농도 측정	□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소화기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비교)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안전장구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비교)	□ ○	• 환기장비	□ ○	• 안전교육	□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 ○	• 운전요원의 입회	□ ○		

전기차단 □	• 차단기기 : 제어실(_____) 현장(_____) •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허가기간 :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확인자_____(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_____ / 복구시간_____ 확인자_____
굴 착 □	• 설비 : 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_____ • 설비 : 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_____ 허가기간 : ~ 확인자_____(서명)
방사선 □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교,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허가기간 : ~ 확인자_____(서명)
고 소 □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 부착 □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_____(서명)
중장비 □	• 투입장비 : (_____)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선,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_____ 허가기간 : ~ 확인자_____(서명)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업체 : 사업주관부서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 _____(서명) 업체 담당자 : _____(서명)

발급자(담당)	주관부서_____직책_____성명_____(서명)	안전부서 협조
승인자(부서장)	주관부서_____직책_____성명_____(서명)	부서_____직책_____성명_____(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발급자 (서명)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고소작업 시)

점검일자 : ○○○○. ○○. ○○

서명	업체 관리소장	사업주관 감독자

구분	점 검 사 항	작 업 자		감 독 자		조치사항
		양호	불량	양호	불량	
1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되어 있는가?					
2	안전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표시 부착되어 있는가?					
3	작업발판 구조 및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4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5	작업발판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6	철골작업 시 승강로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7	철골작업 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8	철골작업 시 안전대의 구명줄 연결은 계속 유지 하는가?					
9	지붕작업 시 폭 30cm이상 작업발판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10	지붕작업 시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11	지붕작업 시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상태는 양호 한가?					
12	개구부 주변 안전난간,울타리,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상태 는 양호한가?					
13	개구부 주변 임시로 난간 등 해체 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14	안전모, 안전대 적정 착용여부 및 안전대 구명줄 지속 연결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및 추가 가능

[별지 8] 차량계 건설기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개정 : '24.10.11., '25.09.13.>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1. 검토 및 승인

구 분		일 자	이 름	서 명
작 성	수 급 업 체			
검 토	사업주관 감독자			
	안전전담부서			
승 인	사업주관 부서장			

가. 검토 결과

(1) 적 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추가 조치사항 및 기타의견

※ 추가 조치사항은 작업 전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재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작업 개요

업체명(부서명)			작업책임자		
공 종			작업장소		
작업기간	시작	09:00	운반경로	시점	
	종료	18:00		종점	
작업지휘자			작업인원		
신호수(유도자)			신호방법		

□ 건설기계 종류 및 제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자동차(덤프포함), □지게차, □SKY, □시저리프트, □기타( )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 □항타발기, □콘크리트펌프카, □불도저, □로울러, □로우더, □어스드릴, □천공기, □크렘셀, □기타( )							
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크레인, □카고, □기타( )							
장비 제원(Ⅰ)					장비 제원(Ⅱ)			
제조사/모델명					제조사/모델명			
장비번호					장비번호			
후방 방호장치 설치	미적용	후방 카메라	후방 경보기		후방 방호장치 설치	미적용	후방 카메라	후방 경보기
조종원					조종원			
차체중량(ton)					차체중량(ton)			
인양하중 (ton)	최대				인양하중 (ton)	최대		
	정격					정격		
작업반경/인양높이					작업반경/인양높이			
중량물 제원 (중량물 하역 및 취급 장비에 한해 작성)					달기구 제원			
품명					줄걸이	재료/규격		
크기(L×H×W)						정격하중		
단위중량(kg)						방법		
운반중량(kg/회)					체결장구	품명/규격		
운반거리(m)						정격하중		

※ 장비관리시스템 등록 및 후방 방호장치 확인 대상 장비

후방 방호장치(총 7종)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 제외), 굴삭기, 로울러, 그레이더, 지게차, 로더, 살수차

□ 안전작업계획

작업 계획		1)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조사 2) 작업내용 3) 작업방법
사용전 확인 사항	건설기계 각종장치 체크리스트	- 누수, 누유, 타이어, 브레이크, 변속레버, 밧데리 충전 여부 확인 등
	안전장치 확인 사항	- 전조등, 경보장치, 헤드가드, 붐 전도방지 장치, 붐 권상 드럼 역회전 방지 장치, 제동장치 및 표시등 작동상태 확인, 안전벨트 등
	엔진시동후 체크리스트	- 압력계, 수온계, 경보등, 누수, 누유 등
	작업일보 작성여부	- 공사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 항목 및 정비사 명, 급유 사항, 작업 내용 등 기록, 조종원, 연락처 기입
안전 대책	추락위험 방지 대책	- 주변 개구부 추락 위험 안전 발판 설치 - 작업구역 설정, 출입통제 식별 띠 설치
	낙하위험 방지 대책	- 작업구역 설정, 출입통제 식별 띠 설치
	전도위험 방지 대책	- 제한속도(10km) 이상 운행 금지 등 - 과다적재 금지, 시야확보 철저 등
	협착위험 방지 대책	- 과다 적재 금지, 시야확보 철저, 접촉방지 및 통제조치 등 - 건설기계(장비)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방법 등, (예)접근금지선 등 설치
	붕괴위험 방지 대책	- 과다 적재 금지, 시야확보 철저 등 - 붕괴 위험 지역 인원 통제, 2중 점검

□ 근로자 작업계획 교육확인

대상자	서명(자필로 성명 기입)			
조종원(운전자)				
작업지휘자/신호수(유도자)				
관련 근로자				

□ 중점 확인사항

항목	Check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는 조사하였는가?	□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지휘자는 배치하였는가?	□
신호수는 배치하였으며 신호방법은 적절한가?	□
전도 및 전락방지 조치는 적절한가?	□
줄걸이 재료 및 체결용구의 상태는 적절한가?	□
장비 주변 및 양중 하부구간의 통제조치는 적절한가?	□
작업 전 5대 위험 요인(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안전대책 확인, 교육은 실시 하였는가?	□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작업자 안전통로
⊠	장비(차량) 진출입로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장비(차량)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2			
3			
4			
5			
6			
7			
8			

[별지 9] 작업지휘자 지정서<개정 : '25.09.13.>

작업지휘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 지휘자로 지정합니다.

※ 작업지휘자의 업무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접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6.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할 것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10] 야간 주말 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

야간 · 주말 · 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사업주관 감독자	사업주관 부서장

공 사 명		사업주관부서	
업 체 명		공사금액	백만원
장 소		작업기간	
작업시간		작업인원	명
작업유형	☐ 밀폐, 전기차단, 고소, 중량물 취급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 건설 기계 등 사용작업 ☐ 굴착작업, 터널 굴착작업 ☐ 교량, 채석작업 ☐ 건물 등 해체작업 ☐ 기타( )		
작업 입회 현황	구 분	성명(연락처)	
	안전담당자(업체)		
	사업주관부서		
투입장비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작업내용	안전대책

20 . . .

작성자(업체): (서명)

* 18시 이후 야간 작업 시 당일 17시 이전, 주말휴일 작업 시 전일 17시 이전 제출

[별지 11] 화재감시자 지정서 <개정 : '23.12.07.>

화재감시자 지정서

계 약 명 :

업 체 명 :

성 명 : (인)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 화재감시자의 준비 및 업무

1.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비치 확인
2.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을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
3. 화재 초기단계 적극적으로 진압
4.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신속히 알림
5.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 지속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6. 화재감시자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준비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12] 작업장 순회 점검표 <개정 : '23.12.07.>

작업장 순회 점검표

계약기간 : ○○○○. ○○. ○○~○○○○. ○○. ○○
점검일자 : ○○○○. ○○. ○○ (○○주차)

	사업주관 감독자	사업주관 부서장
서명		

구 분	점 검 사 항	양호	미흡	불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가?			
	2.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 관리상태는?			
	3. 작업자 1인당 최소 1.5㎡의 작업공간 확보상태?			
	4. 재료, 반제품 및 생산품의 저장과 적재가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5.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는?			
	6.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전기 작업	1. 작업은 전기담당자가 실시하고 있는가?			
	2. 스위치에 시건장치 설치 및 안전보건표지(전기주의 등) 부착 상태는?			
	3. 전동공구에 이중절연구조 및 접지상태는?			
유해물질 (특정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작업	1. 취급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비치 상태는?			
	2.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상태는?			
	3. 취급장소에 소화기 비치 상태는?			
	4. 취급장소에 통풍 및 환기 상태는?			
	5.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는?			
소방안전	1. 소화기의 충전상태는?			
	2. 소화기 호스의 균열 및 노즐의 파손상태는?			
	3. 몸체의 녹, 부식, 누액, 파손 상태는?			
	4. 소화기에 월별점검표 및 사용법 부착상태는?			
	5. 소화전 내 밸브와 호스의 연결부위 및 누수상태는?			
	6. 소화기배치도 및 소방조직도 비치 상태는?			
	7. 대피로는 제대로 확보 되어 있는가?			
	8. 위의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문제점 조 치				
점검부서		점 검 자		(서명)
대상업체		업체 관계자		(서명)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가능

[별지 12의2] 작업장 순회 점검표(임대업체) <신설 : '24.10.11>

작업장 순회 점검표(임대업체)

계약기간 : 20○○. ○○. ○○~○○○○. ○○. ○○

점검일자 : 20○○. ○○. ○○ (○○주차)

(범례: 양호 ○, 미흡 △, 불량 ×)

	사업주관 감독자	사업주관 부서장
서명		

구 분	점 검 사 항	업체명1	업체명2	업체명3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가?			
	2.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 관리상태는?			
	3. 작업자 1인당 최소 1.5㎡의 작업공간 확보상태?			
	4. 재료, 반제품 및 생산품의 저장과 적재가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5.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는?			
	6. 작업장의 통로표시 및 통로확보 상태는?			
전기 작업	1. 작업은 전기담당자가 실시하고 있는가?			
	2. 스위치에 시건장치 설치 및 안전보건표지(전기주의 등) 부착 상태는?			
	3. 전동공구에 이중절연구조 및 접지상태는?			
유해물질 (특정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작업	**1. 취급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비치 상태는?**			
	2.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구 착용 상태는?			
	3. 취급장소에 소화기 비치 상태는?			
	4. 취급장소에 통풍 및 환기 상태는?			
	5.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는?			
소방안전	1. 소화기의 충전상태는?			
	2. 소화기 호스의 균열 및 노즐의 파손상태는?			
	3. 몸체의 녹, 부식, 누액, 파손 상태는?			
	4. 소화기에 월별점검표 및 사용법 부착상태는?			
	5. 소화전 내 밸브와 호스의 연결부위 및 누수상태는?			
	6. 소화기배치도 및 소방조직도 비치 상태는?			
	7. 대피로는 제대로 확보 되어 있는가?			
	8. 위의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대상업체	업체명1	업체명2	업체명3
문제점 조 치			

점검부서		점 검 자	(서명)
대상업체	업체명1	업체 관계자	(서명)
대상업체	업체명2	업체 관계자	(서명)
대상업체	업체명3	업체 관계자	(서명)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가능

[별지 13] 합동 안전 점검일지<개정 : '25.09.13.>

합동 안전 점검일지

구 분	점 검 사 항	양 호	불 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 피트의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재료, 반제품 및 생산품은 저장과 적재가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 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가연성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밸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작업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작업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판정에 대한 조치 사항(개선사항)

점검 일자		년 월 일				
점검자	도급인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수급인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점검내용은 공사 및 용역 사항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가능